

## 光州直轄市西區低所得住民福祉會館設置條例(案)審查報告書

1993 . 5 . 29

社會產業委員會

### 1. 審查經過

가. 提案日字 및 提案者 : 1993年 4月 27日, 西區廳長 提出

나. 回附日字 : 1993年 4月 29日 回附

다. 上程日字 : 第23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(臨時會)

第2次 社會產業委員會(1993. 5. 29) 上程 · 議決

### 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社會課長 李龍玉)

가. 提案理由

- 이웃사랑 10가지 施策 事業의 일환으로 推進된 低所得住民福祉會館이 완공되어
- 低所得住民에게 福祉서비스를 提供 階層間的 葛藤解消와 住民化合 風土造成을 위하여 運營上의 關係 規定을 制定코자 함.

나. 主要骨子

- 會館의 位置는 光州直轄市 西區 月山2洞 155-25番地
- 事業은 兒童福祉 靑少年福祉 및 其他 住民福祉增進에 必要한 事業
- 會館利用은 生活保護對象者 子女 優先 利用料 免除
- 會館은 區廳長이 運營管理하되, 다만 會館의 效率的 運營管理를 위하여 區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一部 또는 全部를 設置目的이 同一한 者에게 委託管理
- 委託時 委託期間은 2年으로 하고 期間滿了時 再協約
- 區廳長은 委託管理할시 受託者에게 會館의 維持 및 管理에 必要한 費用을 豫算範圍內에서 補助.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: 廉九烈)

- 本 條例는 이웃사랑 10가지 施策事業의 일환으로 光州直轄市 西區地域 實定에 맞게 推進되어온 低所得層 住民을 위한 社會福祉事業으로
- 영乳兒 保育 및 敎育 靑少年의 공부방 運營等 西區管内 低所得層 住民의 많은 利用이 豫想되며 특히 月山2洞 等 福祉會館 周邊洞 400余世代의 低所得層 및 어려운 住民의 福祉전당으로 活用되게 되어 地域社會 發展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
- 現實에 맞는 條例案이므로 制定하여 施行하되 제5조 제2항 제2호의 국가보훈 대상자 및 직계가족을 제3호에 포함 시행하였으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.

### 4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 疑	答 辯
<input type="checkbox"/> 윤봉근 위원장 ○ 제5조 제2항 제2호의 국가보훈 대상자 및 직계가족을 시행규칙칙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.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과장 이용옥 ○ 시행규칙으로 하겠습.
<input type="checkbox"/> 김택중 위원 ○ 제7조 제2항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 있겠습니까.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과장 이용옥 ○ 시행규칙에 명시하겠습.
<input type="checkbox"/> 김성채 위원 ○ 제5조 제2항의 면제할 수 있다를 시행규칙에 면제한다로 명시할 수 있겠습니까.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과장 이용옥 ○ 시행규칙에 명시하겠습.

5. 討論要旨

없 습

6. 修正案의 要旨

가. 提案日字 및 提案者 : 1993年 5月 29日, 社會産業委員長 尹奉根

나. 修正理由 : 西區 管內에 居住하는 低所得住民子女로서 生活保護法에 의한  
生活保護對象者를 優先的으로 惠澤을 주고자함에 있음.

다. 修正主要骨子 : 국가보훈대상자 및 直系家族을 削除

7. 審査結果

修正案은 修正案대로 原案은 原案대로 可決

8. 少數意見의 要旨

없 습

9. 其他 必要한 事項

없 습